

의안번호	제 700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월 일 (제 회)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7년 9월 29일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700
----------	-----

제출연월일 : 2017년 9월 29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위탁기간 만료('17.12.31.)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침('17.9.15.)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 위탁기간 :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3년간('18. 1. 1. ~ '20. 12. 31.)
- 위탁범위 :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업무 전반
- 수탁기관
 -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포함), 연구기관
 - 민간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주된 사무소가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법인 및 단체 또는 충청북도 관내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서 아동복지 관련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위탁 주요사무
 - 지역아동센터 운영 컨설팅, 평가지원
 - 민간자원 개발·연계, 교육·조사 연구사업
 - 충청북도 특성화 시책사업 지원
 -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업무 등

3. 참고사항

가. 現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 현황

- 지원단 운영 경과
 - '11. 1월~'12. 12월 : 공개경쟁 최초 지정위탁
 - '13. 1월~'14. 12월 : 공개경쟁 지정 위탁
 - '15. 1월~현재 : 공개경쟁 지정 위탁
- 수탁기관 : (사)일하는공동체('15. 1. 1. ~ '17. 12. 31.)
- 사업비('17년) : 169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기관위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34
- 조직·인력 : 3명(단장 1, 팀장 1, 직원 1)

나. 관계지침 및 조례 : 별첨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6619호(2017. 9. 15.)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부칙 제2조(경과조치)

- 지역아동센터 총칭북도지원단 -
운영 민간위탁 계획



보 건 복 지 국
복 지 정 책 과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계획

- ◇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단장 이창희, 49세)의 위탁기간 만료('17.12.31.)에 따라 효율적인 민간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최적의 기관을 공모선정하고자 합니다.

- 공개모집/민간위탁(3년)/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5인이내) -

□ 추진근거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6619('17.9.15), 시도지원단 운영지침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18. 1. 1. ~ '20. 12. 31.(3년)
- 위탁범위 :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업무 전반
- 위탁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 위탁사업비 : 169백만원 정도(국비 50%, 도비 50%) * 변동가능
- 위탁사무
 - 지역아동센터 운영 컨설팅, 평가지원
 - 민간자원 개발·연계, 교육·조사 연구사업
 - 충청북도 특성화 시책사업 지원
 -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업무 등

< 現 수탁자 현황 >

- 수탁자 : 사단법인 일하는공동체 (대표 박종효)
- 수탁기간 : '15. 1. 1. ~ '17.12.31. (3년간) ※ '11.1.1~ 현재까지
- 사업비 : 169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조직·인원 : 3명 (단장1, 팀장1, 직원1)
- 사무실 :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34(산남동)

□ 추진절차

① 의회동의	· 추진계획 수립 및 민간위탁 의회동의	'17.9~11월
② 수탁운영 공고	· 방법 : 공개모집(15일 공고) · 자격 - 교육법에 의한 대학, 연구기관 - 도내 비영리법인 및 단체	'17.11월
③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구성 : 관련 공무원 포함전문가 5인 이내 · 심사 : 전문성, 사업실적, 사업계획 등 · 결정 : 최고 득점자 선정	'17.11~12월
④ 협약체결	· 협약체결 및 공증	'17.12월

① 의회동의

- 동의근거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 4조 제3항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③ >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동의시기 : '17. 10~11월 임시회기중

② 수탁공고

- 공고기간 : '17. 11월 (15일간)
- 공고방법 : 도 홈페이지 공고
- 선정방법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정 (고득점자 선정)
- 신청자격
 -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포함), 연구기관
 -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주된 사무소가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법인 및 단체 또는 충청북도 관내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서 아동복지 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 수탁조건
 - 관계법령·조례·지침 등을 준수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
 - 사업공간 확보 및 임대운영시 임대보증금의 수탁기관 부담
 - 현 직원의 고용승계 등 종사자의 신분보장을 위해 노력

③ 수탁심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개최시기 : '17.11~12월

- 구성인원 : 5인 이내

※ 신청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관계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로 위촉

- 심사항목

- 위탁단체 기본요건(30) : 사업취지, 필요성, 사업운영 계획 등
- 사업수행능력 (30) : 사업추진 경력 및 사업수행 능력, 성과
- 단체 자격 요건 (30) : 기관의 신뢰성, 수행인력 전문성
- 예산운용 능력 (10) : 예산 책정의 합리성

○ 계획설명 : 공모기관별 각 20분 이내

○ 수탁자 선정 : 최고 득점기관, 수탁신청자가 2명 미만이거나
협약대상자 협약결렬시 재 공모

④ 협약체결

○ 체결 시기 : '17. 12월

○ 내용 : 협약 체결 및 협약 내용 공증, 업무 인계·인수

□ 향후계획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 '17. 10~11월

○ 수탁운영자 공고 : '17. 11월 (15일간)

○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17. 11~12월

○ 협약 체결 및 공증 : '17. 12월

○ 위·수탁사무 개시 : '18. 1. 1.

붙임 관련지침 및 조례 발췌 1부

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8년~2020년도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안내

1.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8~2020년도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안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 붙임을 참고하여 시도별 위탁절차 계획 등을 수립,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등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시도지원단 위탁결과를 2017. 12. 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2020년도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안내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가족담당관), 부산광역시(아동청소년과장), 대구광역시(여성가족정책관), 인천광역시(아동청소년과장), 광주광역시(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대전광역시(여성가족청소년과장), 울산광역시(복지인구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여성아동청소년과장), 경기도지사(아동청소년과장), 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 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복지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여성청소년과장), 전라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 경상북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 경상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복지청소년과장)

주무관	박영호	행정사무관	박광돈	아동권리과장	전결 2017. 9. 15.
협조자				아동권리과장	임대식
시행	아동권리과-6619	(2017. 9. 15.)	접수	복지정책과-20916	(2017. 9. 15.)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동)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3439	팩스번호	044-202-3968	/ emile05@korea.kr	/ 대국민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민간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위탁기간 만료시점에 이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